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도 규 엽 (연구책임자)

안 수 길 (공동연구원)

2023. 10. 29.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2023. 10. 29.

연구책임자: 도규엽(상지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안수길(명지대학교 교수)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연구책임자 도규엽

요 약

-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절차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에 있어서 직접대면조사가 아닌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방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진 상황임
 - 현재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법무부는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하여 추후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밝힌 바 없음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함
 - 향후 추진과제로서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화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

음

- 원거리에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비협조적인 참고인 등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원거리에 있는 수사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촉탁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이 있음
- 다만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법을 대폭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 고려요소로는 기술적 요소, 조사 대상 및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 차별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조사 대상자의 의사, 팬데믹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등을 들 수 있음
- 해외의 법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독일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상조사방식의 요건을 대폭 낮추어 화상조사방식과 대면조사방식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증인이나 피의자를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직접 소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조사방식이 아닌 대면조사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코로나19의 비상상황하에 대처할 예외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한 온라인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2001년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원격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었음
 -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대안 마련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가상조사방법의 도입을 통한 수사방법의 가시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형사절차의 비대면화 및 원격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 부회 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국들이 현재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그 사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

고 할 수 있음

- 효율적이면서도 신뢰가능한 조사방법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 즉 본인인증기술 및 네트워크 연결성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요소,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피의자의 방어권, 조사 대상자의 의사,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사상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구축하여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한 영역부터 시범도입을 하여 차츰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화상조사방법이 피의자 신문에서까지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결국 화면 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정밀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는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상용화될 필요가 있음
- 수사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규정에 추가

하여 규정하고, 화상조사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들, 즉 앞서 언급한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고려요소 및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들은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본인인증기술을 고려할 때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조사에 한하여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변성 강한 요소들은 명령이나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임
- 원격 화상조사 시 녹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팬데믹 등 비대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비상상황하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범위를 예외적으로 넓히는 규정 신설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음

차 례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II. 수사단계상 화상조사 관련 국내 현황 / 7	
1. 법제	7
2. 논의 현황	9
3.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필요성	11
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11
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	12
다.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이점	13
III.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해외 입법례 고찰 /15	
1. 팬데믹 이후 전면적 허용을 법제화한 독일	15
가. 법제	15
나. 논의 현황	21
2. 팬데믹 이후 제한적 허용을 법제화한 오스트리아	23
가. 법제	23
나. 논의 현황	26
3. 팬데믹 동안 일시적 허용을 법제화한 영국	30

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30
나. 「피의자 대면조사에 관한 지침」	31
4. 팬데믹 이전부터 전면적 허용을 법제화한 프랑스	34
가. 법제	34
나. 논의 현황	37
다. 관련 사례	38
5. 팬데믹 이후 논의를 시작한 일본	41
가. 법제	41
나. 논의 현황	41
(1) 개관	41
(2)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의 최종보고서	43
(3)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부회 회의	47
(4) 비디오링크방식의 도입에 관한 논의	51
6.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된 미국	53
7.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57

IV.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방안 / 61

1. 활용방안 구상에 있어서 고려요소	61
가. 기술적 요소	61
(1) 본인인증기술	61
(2)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 등	64
(3) 네트워크 연결의 안전성 및 네트워크 보안성	65
나.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66
다.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67

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68
마. 조사 대상자의 의사	69
바.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70
2.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72
가.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72
나.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입법안	75

V. 결론 / 79

□ 참고문헌 / 85

그림 차례

[그림 1] 법무부의 원격 화상조사 관련 소개자료	3
[그림 2]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	6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최근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상에 있어 ‘전자화’는 중요한 지향점이 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과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데 이어,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으로써 법제도적으로 본격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법무부는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의 일환으로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전망한 바 있다.¹⁾ 향후 추진과제로서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화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에 대하여 밝

1)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입법예고 -」, 2020.8.13., p.5.

2) 법무부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자료, p.15, (최종검색일: 2023.8.23.), <https://www.kics.go.kr/images/renew/brochure/kics_

힌 바는 없고,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해외 법제 현황을 조사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또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다방면에 있어서 가상 및 원격기술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게 되었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 변화는 급진적이면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대면성 또는 원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술들이 활용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비대면·비접촉이 강력히 요구됨으로써 기존의 대면 및 접촉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던 사회적 서비스들이 마비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수사절차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해외의 일부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데믹 상황이 언제든 다시 닥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비한 화상조사방법 도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법무부의 원격 화상조사 관련 소개자료

■ 향후 추진 과제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



자료: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자료, p.15

2. 연구의 목적

화상조사는 원거리에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조사에 비협조적인 참고인 등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팬데믹 등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원거리에 있는 수사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촉탁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이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 법무부가 수사단계상 원격 화상조사의 도입을 예고한 현 시점에서, 형사절차의 전자화 추세 및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한 대비라는 명분과 함께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화상조사방법의 이점과 한계점,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화상조사방법을 수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에 대한 법제 연구로부터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여러 가지 선결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다. 즉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본인인증기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기술적 요소’,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조사 대상자의 의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둘러싼 국내의 법제 및 논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사법절차의 전자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이점 등을 고찰하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학술적 논의도 그리 활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사단계상 화상조사방법 활용 관련 해외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 만큼, 연구는 비교법제적 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사실 해외의 경우에도 화상조사방법이 오랫동안 폭넓게 활용되어 온 것이 아닌 터라 근거 규정은 물론 적용례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들은 분명 향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스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을 비교법제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법률이 있는 나라는 해당 법률 및 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관련 지침 등이 있는 경우 그 역시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범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개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수사단계상 화상조사 관련 국내 현황

1. 법제

현재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2010년에 「형사절차전자화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이 제정된 데 이어, 2021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대하여 입법 차원에서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한적이거나 화상조사방법의 이용에 대하여 정한 현행 규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대검찰청 예규인 「원격 화상조사 업무처리 지침」을 예로 들 수 있다. 제1조는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교정기관간에 설치된 원격 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는 “조사자는 피조사자를 조사함에 있어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성, 피조사자의 접근성·편의성, 사건처리의 신속성, 교정시설 수용자(수형자·미결수용자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함)에 대한 교정기관의 호송 및 계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격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예외적으로 화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검찰청과 검찰청 간 및 검찰청과 교정기관 간의 화상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

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조사가 곤란한 점을 근거로 재외공관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면조사원칙을 양보하고 예외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화상조사방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대면조사의 장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사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 다만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 측면에서, 동조의 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는 재외공관에의 출석을 전제로 한 제도로서 공간적 제약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서 등에서의 출석 없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 등을 통한 화상 및 음성의 송출로써 대면조사를 대체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3)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 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178.

2. 논의 현황

화상재판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제법 활발했던 것과 달리,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기존 학계에서의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몇몇 학자들이 학술논문 혹은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방법론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한 경우조차 찾기가 어렵다.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수사방법으로서 화상조사의 활용이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대체로 수사절차는 대면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는 관념에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통한 수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은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화상조사와 전화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비대면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조사 결과를 보면,⁵⁾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그리고 제한적 허용 의견으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⁶⁾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장점으로서는, 전염병 감염위험이 감소된다는 점, 피조사자의 돌발행동 및 고의적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⁷⁾ 또 대면조사의 경우 조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피조사자

4)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이점’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5) 표적집단면접 및 일대일 전화면접은 총 28명(경찰 6명, 검찰 10명, 법원 7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김대근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1) -팬데믹에 따른 수사과 재판의 변화와 대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p.98).

6) 김대근 외, 앞의 글, p.144.

7) 김대근 외, 앞의 글, p.145.

와의 일정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정조정이 용이한 비대면 조사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고 한다.⁸⁾ 또한 비대면 조사의 활용으로 조사과정에 대한 녹화나 녹음이 가능해지면 자백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⁹⁾

비대면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조사 및 수사 기법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비대면 조사를 전면 도입할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의 신변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체포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¹⁰⁾ 특히 침예하게 대립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대질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할 것이고 비대면조사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변호사 집단이 대체로 공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¹¹⁾

마지막으로 비대면조사의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제한적·부분적 허용을 제안한 입장도 있었는데, 특히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¹²⁾ 부인하는 피의자나 대질이 필요한 핵심 증인 등은 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고소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은 화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¹³⁾

8) 김대근 외, 앞의 글, p.145.

9) 김대근 외, 앞의 글, p.145.

10) 김대근 외, 앞의 글, p.146.

11) 김대근 외, 앞의 글, p.147.

12) 김대근 외, 앞의 글, p.145.

13) 김대근 외, 앞의 글, p.145.

3.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필요성

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최근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상에 있어 ‘전자화’는 중요한 지향점이 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고, 최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예고 및 홍보하고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라 함은 전자적으로 작성·유통·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변환된 전자화문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의 광범위한 활용을 전제로 한 패러다임의 큰 변화로서,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¹⁴⁾ 법제도 정비 차원에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된 것이고,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23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⁵⁾ 차세대 KICS는 전자문서등을 작성·관리·유통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첨단 정보기술(IT) 기술 도입으로 대면접촉을 줄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¹⁶⁾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통해

14)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 p.4.

15)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 p.5.

16)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 p.5.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¹⁷⁾ 향후 추진과 제로서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화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

전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기능이 한동안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비상사태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⁹⁾ 비말감염 등 대면접촉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되는 성격의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대면성을 바탕으로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사활동은 비대면성에 대한 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²⁰⁾ 팬데믹 상황의 지속기한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모든 수사활동을 멈출 수는 없으므로 팬데믹 등 비대면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비상상태하에서는 수사의 대면성 원칙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²¹⁾

17)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 p.5.

18)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자료, 15면. (최종검색일: 2023.8.23.), <https://www.kics.go.kr/images/renew/brochure/kics_brochure.pdf>.

19) 도규엽,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 2022, p.3.

20) 도규엽, 앞의 글, p.3.

21) 도규엽, 앞의 글, p.3.

다.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의 이점

화상조사방법이 지니는 여러 장점들을 근거로 수사단계에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견해가 있다.²²⁾ 거론되는 이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원거리에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²³⁾ 우리 사회는 인정에 기초하여 남의 잘못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용하려는 대가족사회의 영향을 받아 남을 밀고하면 소속된 집단에서 소외를 당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의식이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²⁴⁾ 때로는 사건 당사자와의 인간관계도 진술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²⁵⁾ 특히 참고인의 경우 타인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고 참고인의 출석을 강요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이 원격지 혹은 해외에 있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참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직접대면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²⁶⁾ 또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한

22) 김대근 외, 앞의 글, p.316; 윤지영, 앞의 글, p.178; 정웅석,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25호, 대검찰청, 2010, p.41; 조기영, 「코로나 시대 형사정책의 과제」,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pp.254-255.

23) 윤지영, 앞의 글, p.178.

24) 정웅석, 앞의 글, p.6.

25) 정웅석, 앞의 글, p.6.

26) 윤지영, 앞의 글, p.178.

측면이 있다.²⁷⁾ 또한 팬데믹 위기상황하에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²⁸⁾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수사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촉탁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²⁹⁾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자적 공간(on-line)과 물리적 공간(off-line)이 하나로 결합되고, 정보교환의 패러다임도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등 정보통신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³⁰⁾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강요당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미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주장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상당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험하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작동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대상자 모두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발전적 재구상이 가능한 독특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³¹⁾

27) 윤지영, 앞의 글, p.178.

28) 김대근 외, 앞의 글, pp.315-316.

29) 김대근 외, 앞의 글, pp.315-316.

30) 정웅석, 앞의 글, p.14.

31) Brian A. Jackson et al., *How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COVID-19 Response Has Provided Valuable Lessons for Broader Reform: Looking to the Future*, Priority Criminal Justice Needs Initiative, 2021, p.1.

Ⅲ.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해외 입법례 고찰

1. 팬데믹 이후 전면적 허용을 법제화한 독일

가. 법제

독일 「형사소송법」(StPO)은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해 피의자³²⁾나 참고인(증인)³³⁾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은 제58조b, 제136조, 제163조a 등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8조b(영상·음성 중계에 의한 신문) 공판 이외의 절차에서 하는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문자가 있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체류하게 하고 신문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증인이 체류하는 장소와 신문실로 생중계하

32)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피의자’(Beschuldigte) 개념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는 수사기관이 범행혐의를 두고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소가 되었지만 공판절차가 개시될지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예비피고인(Angeschuldigte) 및 공판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은 피고인(Angeschuldigte)을 모두 ‘Beschuldigte’라고 지칭한다(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p.vii).

33)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증인’(Zeuge)이라는 용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참고인’과 ‘증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참고인과 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증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독일 법제를 서술할 때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참고인도 포함하는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6조(신문³⁴) [...] ⑤ 제58조b는 준용한다.

제163조a(피의자신문) [...] ③ 피의자는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내지 136조a 및 제168조c 제1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에는 제136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6문,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36조a를 준용한다. [...]

위와 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은 2013년이다. 동년 4월 25일 독일 연방의회는 「공판절차 및 수사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³⁵을 공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제58조b를 신설해 수사절차에서 증인을 화상조사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제58조b를 공판절차에서 하는 피의자신문(피고인신문)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공판절차에서 법관이 하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인 제136조에 “제58조b를 준용한다”는 문구도 함께 추가한 것이다.

독일이 이러한 개정을 추진한 데에는 — 이 개정을 시행하는 법률명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 형사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연방의회는 수사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하면 증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을 오가고 수사기관과 서류를 주고받는 시간을 절약

34) (역자 주) 피의자신문을 의미한다.

35) Bundesgesetzesblatt Jahrgang 2013 Teil I Nr. 20, Gesetz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 vom 25. April 2013, S. 935 Artikel 6. 이 법률은 2013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하는 날짜를 쉽고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어서 수사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본 것이다.³⁶⁾ 아울러 피해자를 보호하고 증거의 멸실 위험을 방지하는 것 역시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해 피의자신문과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이다.

예컨대 증인이 질병이나 노쇠 등으로 인해 신문장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신문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문장소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기술을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아울러 화상회의기술을 이용해 신문을 하도록 하면 해당 사건을 잘 아는 수사관이나 법관이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증인의 증언 역시 더 정확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³⁷⁾

형사절차에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2013년에 신설된 제58조b와 이를 준용한 제136조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8년 4월 30일 연방의회는 「형사절차상의 신문에서 증인 보호 및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법률」³⁸⁾을 통해 제247조a를 마련하면서 만약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하여 신문을 받을 경우 증인의 안녕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인의 신문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진술은 “동시 중계를 통해 그 화면과 음성이 공판정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는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재판에서 장기간 또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이 공판정과 멀리

36) BT-Drs. 17/1224, 2010. 3. 24., S. 1 ff.;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7.

37)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7.

38) Bundesgesetzesblatt Jahrgang 1998 Teil I Nr. 25,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ßordnung und der 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 - ZSchG), 1998. 4. 30., S. 820 ff.

떨어진 장소에 있어서 공판정에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검사, 변호사 및 피의자의 동의가 있으면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하여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³⁹⁾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연방의회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실과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화상회의기술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는데 드는 기술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경되었으므로 장비와 시설의 미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과 관련해서는 공판절차는 물론이고 수사절차에서도 국가기관이 당사자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절한 재량권을 발휘해 화상회의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58조b를 신설하고 이를 제136조에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⁴⁰⁾

다만 제58조b는 공판절차 이외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증인신문 및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하는 신문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공판절차 이외에서, 즉 수사절차 등에서 화상회의기술을 이용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⁴¹⁾ 이는 직접주의 등을 고려해 증거가 공판절차에서 검토되도록 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화상회

39) BT-Drs. 17/1224, 2010. 3. 24., S. 10.

40) BT-Drs. 17/1224, 2010. 3. 24., S. 10 ff.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1;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5; Schmitt, § 58b, Meyer-Goßner/Schmitt, StPO, 63. Aufl., 2020, Rn. 1. 다만 연방의회는 이 개정안을 실시할지의 여부를 각 연방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했는데, 모든 연방주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만이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4.

41)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0.

의기술을 사용해 피의자를 신문해야 할 필요가 커지자 2021년 7월 21일 「형사소송법의 계속적인 발전 및 기타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⁴²⁾을 통해 “제58조b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제136조를 검찰과 경찰이 하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인 제163조a 제3항과 제4항에 준용하도록 했다. 즉, 제58조의b가 136조라는 가교를 통해 제163조에 적용됨에 따라 지금은 수사기관도 수사절차에서 증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화상회의기술을 이용해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⁴³⁾ 또 제58조b는 제72조를 통해 감정인이 하는 감정이나 통·번역인이 하는 통·번역에도 적용된다.

화상조사의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할지의 여부는 신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즉, 신문자는 화상회의기술을 형사절차에 도입한 규정의 목적, 수사기관의 조사의무 등을 고려하여 화상조사의 필요 유무를 재량껏 판단한다.⁴⁴⁾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예컨대 증인이 수사 대상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화상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⁴⁵⁾ 증거보전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감안된다. 특히 증인이 질병이나 노쇠 등으로 인해 신문장소에 출석할 수 없으며 시간이 더 지나면 증언을 하지 못하

42)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21 Teil I Nr. 37 Gesetz zur Fortentwickl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2021. 6. 25., S. 15, 41.

43) BT-Drs. 17/1224, 2010. 3. 24., S. 10 ff. BMJV, Entwurf eines Gesetzes zur Fortentwickl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2020. 10. 6., S. 62;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1; Brexl, “Gesetz zur Fortentwicklung der StPO: Lichtblicke bei der Revisionsbegründungsfrist”, AnwBl Online 2021, 271;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 Meißner, “Corona und StPO oder: Eine (rechtstechnisch) kleine Änderung mit weitreichender Wirkung”, 2020. 10. 30.

44)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2.

45)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2.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⁴⁶⁾ 이상의 사실은 화상회의기술이 피의자나 증인이 있는 장소와 신문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국한해서만 사용되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할지의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신문자가 있는 장소와 피신문자가 있는 장소를 분리하여 화상조사방식으로 신문을 하는 것이 진실발견, 증인보호 또는 절차의 신속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⁴⁷⁾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할지의 여부를 정할 때 피의자나 증인 등 관계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⁴⁸⁾ 피의자나 증인의 출석권한 내지 출석의무(제48조 제1항 제1문, 제161조a 제1항 제1문) 등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며, 피의자나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제68조b 등) 역시 마찬가지다.⁴⁹⁾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⁵⁰⁾ 증인이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⁵¹⁾ 물론 증인이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는 영상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를

46)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2.

47)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2.

48)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2;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2; Schmitt, § 58b, Meyer-Goßner/Schmitt, StPO, 63. Aufl., 2020, Rn. 2.

49)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2;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 Schmitt, § 58b, Meyer-Goßner/Schmitt, StPO, 63. Aufl., 2020, Rn. 2.

50) BT-Drs. 17/1224, 2010. 3. 24., S. 11;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3;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3.

51) BT-Drs. 17/1224, 2010. 3. 24., S. 11; Bader, § 58b, KK-StPO, 9. Aufl., 2023, Rn. 3;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3.

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⁵²⁾

영상으로 중계하는 피의자신문을 녹화·녹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제136조 제4항은 “수사의 대상이 고의의 살인죄이고 녹화·녹음을 방해하는 외적 상황과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피의자가 정신능력이 한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녹음하여야 그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문을 녹화·녹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논의 현황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나 증인의 신문을 녹화·녹음하도록 한 제136조 제4항이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비하면,⁵³⁾ 피의자나 증인의 신문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한 제58조b를 놓고는 별다른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체진실의 발견과 직접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화상으로 조사하는 방식보다 원칙적으로 낫다고 여기는 측에서는 화상조사방식의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 이들은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신문자나 기타 관계자 등이 신문 현장에서 피의자나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들으면서 얻는 인상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문절차에서 피의자나 증인이 보이는 반응을 포함하여 신문절차의 모든 장면을 생중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인상과 정보의 가치가 증인을 대면으로 신문할 때에 얻는 그것들에 필적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화

52)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4.

53) 안수길,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p.222 이하.

상조사방식으로 신문에 참가하는 관련자들로서는 피의자나 증인의 진술에 추가로 질문을 하거나 이 질문에 대해 피의자나 증인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는데, 이 역시 화상조사방식의 한계라는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조사는 어디까지나 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범행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나 증인이 신문장소로 이동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면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58조b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화상조사방식을 직접대면조사와 동등하게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⁵⁵⁾

54) Bundesrechtsanwaltskammer, Stellungnahme zu Artikel 1 und 6 des Entwurfes eines 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 (BT-Drucks. 17/1224), 2010, S. 3 ff.;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8.

55) Bundesrechtsanwaltskammer, Stellungnahme zu Artikel 1 und 6 des Entwurfes eines 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 (BT-Drucks. 17/1224), 2010, S. 3 ff.; Maier, § 58b, MüKoStGB, 2. Aufl., 2023, Rn. 18.

2. 팬데믹 이후 제한적 허용을 법제화한 오스트리아

가. 법제

오스트리아 역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나 증인을 화상조사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StPO)에 마련해 두었다. 제153조 제4항, 제165조 제3항, 제172조 제1항, 제174조 제1항 등이다.

제153조(신문) [...] ④ 증인 또는 피의자의 체류지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피의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말과 영상을 중계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나, 다만 증인 또는 피의자를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 소환하는 것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볼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피의자 또는 증인의 반대신문) [...] ③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제66조a) 또는 제66조a에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진실규명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절차의 참여자 및 그의 대리인이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말과 영상을 중계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절차에 참여하고 질문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신문을 위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증인이 가능한 한 피의자 및 절차의 다른 참여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2조(체포의 집행) ① 체포명령을 집행한 경우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원에 집행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교도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다만 체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과도한 비용을 들이야만 위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위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교도소로 인도하거나 치료소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말과 영상을 중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미결구금을 명할 수 있다.

제174조(미결구금의 선고) 체포된 모든 피의자는 교도소로 인도된 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미결구금의 요건에 관한 신문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전염병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신문을 제153조 제4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에 변호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153조는 증인이나 피의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말과 영상을 중계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증인이나 피의자는 그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그곳에서 화상중계방식을 통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의 신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인이나 피의자를 그가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직접 소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의 예로는 증인이나 피의자의 개인적인 인상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뽑힌다.⁵⁶⁾

제165조 제3항은 성범죄 피해자나 미성년자 피해자와 같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진실규명의 필요를 위해 화상조사의 방식으로 피의자나 증인의 신문을 하는 경우를 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의자가 있는 장소와는 분리된 공간에서 화상조사의 방식으로 법관이나 전문가에 의하여 신문을 받고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을 ‘증인배려신문’(schonende Vernehmung)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 등과 대면하여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증인배려신문을 실시할지의 여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한다.⁵⁷⁾

제172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교도소로 인도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교도소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화상조사기술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한다.⁵⁸⁾

제174조는 법원이 미결구금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56)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9; Hinterhofer/Oshidari, System der österreichischen Strafverfahrens, 2017, Rz. 7.595.

57)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9; Hinterhofer/Oshidari, System der österreichischen Strafverfahrens, 2017, Rz. 7.605; Sautner, Videotechnologie im Strafverfahren: Kommunikation, Dokumentation und Reproduktion, Juristische Blätter 141, 2019, S. 212.

58)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34 f.

경우를 정하는 조항인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정되었다. 즉, 코로나19 사태에 서처럼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을 화상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⁵⁹⁾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으로 하는 신문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녹화·녹음할 수 있다. 하나는 신문을 받는 사람에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신문과정 전체를 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대상자가 증인인 경우에는 그 증인이 녹화에 반대하는 한 녹화할 수 없다(제97조).⁶⁰⁾

나. 논의 현황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벌이는 토론을 살펴보면,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요컨대,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하면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방해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화상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나 증인의 방어권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의자나 증인은 화상조

59)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31 ff.

60)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10 ff.

61)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48 ff.

사방식으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과 동석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을 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먼저 변호인이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신문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화상조사 방식으로 신문에 참여해도 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의자는 화상으로만 연결된 변호인과는 원활하게 협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인 알마 자디츠(Alma Zadić)는 화상조사방식으로 신문을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휴대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실은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만 정당성을 지닌다는 증거가 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⁶²⁾

영상중계를 할 때에는 카메라의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주위 상황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문이 진행되는 장소에 다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한다면 진술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되며, 카메라를 너무 멀리 잡으면 신체 전체를 포착할 수는 있으나 신문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여러 면이나 공간의 여러 면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 주는 이른바 스플릿 스크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62)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50.

다고 한다. 또 생중계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만약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디오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영상과 음성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문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진술을 이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메라가 신문을 하는 장소를 모두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치되지 않으면 개인이 잘 보이지 않고 그의 진술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화상조사방식이 해킹을 당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조작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보안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된다.⁶³⁾

더 나아가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화상조사방식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이를테면 영상에 나오는 사람 뒤의 배경화면도 그 사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피의자가 화면에 크게 잡히면 사람들은 피의자를 더 많이 주목하게 되고 이는 피의자의 신뢰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각도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⁴⁾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에는 비언어적 소통, 표정, 제스처, 몸짓, 상대방에 대한 특정한 신호 등의 요소 등도 중요하므로 화상조사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이들 요소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화상조사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화상조사방식에서는 사람들이 눈빛을 직접 교환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 문제는 특히 다수의 사람

63)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6 ff.

64)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7 f.

이 화상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더 커지는데, 이를테면 피의자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또는 발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눈빛의 교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신문받는 사람의 진실성과 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65)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9.

3. 팬데믹 동안 일시적 허용을 법제화한 영국

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은 재판 및 그 외의 형사적 진술청취에서 실시간 연결(live links)의 가용성 확장을 규정하면서, 재판 외의 형사적 진술청취에서의 실시간 연결에 대한 내용인 Schedule 24는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 대한 임시수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영국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일시적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을 통하여 실시간 연결방법의 활용 폭을 넓히는 방법을 취하였다.

제53조(재판절차에서 실시간 연결의 가용성 확장) Schedule 23은 아래의 임시수정을 포함한다.

- (a) 2003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 (b) 1968년 형사항소법(the Criminal Appeal Act 1968),
- (c) 1988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54조(그 외 다른 형사적 진술청취에서 실시간 연결의 가용성 확장) Schedule 24은 아래의 임시수정을 포함한다.

- (a)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b) 2003년 범죄인 인도법(the Extradition Act 2003),

- (c)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d) 1985년 범죄소추법(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e)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나. 「피의자 대면조사에 관한 지침」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서의 비상대응은 「피의자 대면조사에 관한 지침」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영국의 경찰청장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영국 변호사협회(Law Society), 형사변호사 협회(Criminal Law Solicitors' Association, CLSA), 런던 형사법정 변호사협회(London Criminal Courts Solicitors' Association)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치로서 경찰 또는 검사에 의해 시행되는 「피의자 대면조사에 관한 지침」(Joint Interim Interview Protocol between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Crown Prosecution Service, Law Society, the Criminal Law Solicitors' Association and the London Criminal Courts Solicitors' Association Version 4 - October 2021)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⁶⁶⁾

66) 「Joint Interim Interview Protocol between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Crown Prosecution Service, The Law Society, Criminal Law Solicitors' Association and London Criminal Courts Solicitors' Association (v.4 - revised October 2021)」, p.1(최종검색일: 2023.8.23.),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National-Interview-Protocol-COVID19-Version-4-4-Oct-2021.pdf>>.

제11조 본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수사관이나 검사
가 조사의 일환으로 피의자를 인터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1조 정부 지침과 코로나19 통제 조치는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며,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사, 법
률대리인, 통역사를 포함한 비경찰 인력의 참석이 포함된다.

제12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상
황에서 PACE Code C(경찰에 의한 피의자의 구금, 처우, 신문에 관한 실
무 규칙)⁶⁷⁾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본 지침의 서명인들은 실무
규칙(Code of Practice)에는 비디오 및 오디오 연결을 통한 원격조사가 포
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하에
서 비디오 및 오디오를 통한 원격조사의 수행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법」(Coronavirus Act 2020)에 따른 형사절차, 법률 및 증거에 관한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격조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
명과 조언을 받은 후에 원격조사 시행에 동의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으면
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구금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제13조 경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및 증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경찰은 법적 대리인을 포함하여
구금시설에 방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실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구금된

67) (역자 주)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de C를 의미하고, Code C는 경찰에 의한 피의자의 구금, 처우, 신문에 관한 실무 규칙(Code of Practice for the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이다.

자에게 증상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인보호장비(PPE)를 지급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4조 피의자에 대한 법률자문은 동 지침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경찰서 내에서 PACE Code C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원격으로 법률자문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위한) 전화 혹은 피의자와의 면담을 위한 비디오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만 경찰서의 시설 및 장비 사정에 따르도록 한다. 통역사 또는 경찰관의 원격조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들은 피고인 측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5조 비디오 연결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는 오디오 연결을 통해 법률대리인과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피의자의 동의를 비롯하여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인터뷰가 오디오 연결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인터뷰는 경찰관에 의해 시각적인 방법으로 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전술한 방식의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만약 피의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록 B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계를 이용하여,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지에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의 서면 진술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16조).

제17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가림막이 설치된 안전한 조사공간이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인터뷰를 위한 고정식 또는 휴대용 녹화 장치를 이용하는) 인터뷰나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4. 팬데믹 이전부터 전면적 허용을 법제화한 프랑스

가. 법제

프랑스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706-71조를 마련하고 있다. 동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⁶⁸⁾

제706-71조 제1항 수사나 예심수사에서 1인에 대한 심리나 신문(또는 심문)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의 대질이 필요한 경우에 정보기밀유지가 보장되는 원격 영상통신수단을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유치 및 법원감치의 연장종료를 위한 출석의 경우에도 원격영상통신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해당 법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작성한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영상화 또는 녹음된 자료들에는 형사소송법 제706-52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항 법원이 판결을 위해서 증인, 양당사자 및 전문가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통신수단의 이용에 관한 제1항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구금된 피고인이 재심법원에 출석하는 때, 검사 및 양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구인영장, 체포영장, 유럽연합의 체포영장, 임시체포청구,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인도 범죄인에 대한 체포청구가 있는 경우에, 예심판사

68) 프랑스 형사소송법 규정은 계인국 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16, pp.105-106 참조.

의 구금된 자에 대한 심리나 신문(또는 심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일시적 구금결정에 대한 선결심리, 구금연장결정심리, 항소법원에심부 또는 판결법원의 일시적 구금소송의 심리,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적용 시 피고인에 대한 중죄법원장의 심문(또는 신문),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논의된 결정을 위한 심리에의 출석 또는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심문에 대해서, 동법 제627-5조(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에의 인도), 제695-28조(유럽연합심의회회의 범죄인 체포 및 인도), 제696-11조(항소법원의 범죄인 인도) 및 제696-23조(국가에 의한 긴급체포 및 인도)를 적용해 석방 및 구금을 결정하는 판사, 항소법원장 또는 지명된 사법관에 대한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의 출석이나 다른 이유로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의 피고인 심문 시에도 제1항과 제2항은 또한 적용된다. 일시적 구속결정이나 일시적 구속연장을 판단하는 심리의 경우에, 구금된 자의 호송이 공공질서나 탈주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된 자는 원격영상통신수단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4항 범죄피해자배상위원회, 일시적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은 항소법원장, 구금배상국가위원회,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심 법원과 재심 및 재조사 위원회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5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 만약 이해당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은 사법관, 관할법원, 관할위원회의 옆 또는 이해당사자의 옆에 위치하게 된다. 첫 번째 경우인 사법관, 관할법원, 관할위원회의 옆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원격영상통신수단을 이용해 이해당사자와 비밀리에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우인 이해당사자 옆에 변호인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가 변호인에게 송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관련서류는 구금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6항 구금된 자에 대해 법원이 평가를 고지하는 것은 원격영상통신 수단의 사용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에 반하는 정당한 결정이 있거나, 구금된 자가 다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신수단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7항 통역인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리, 신문(또는 심문) 또는 대질신문 시에 통역인은 원격영상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8항 필요시에 국사원령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사항을 정한다.

위와 같이 프랑스는 수사절차를 비롯하여 구금이나 공판절차 같은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원격 화상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이나 통역인 등의 경우에도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⁶⁹⁾

프랑스에서 사법절차에서 원격 화상방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2000년 11월 22일 파리고등법원과 프랑스의 해외령인 생 피에르와 미클롱(Saint-Pierre-et-Miquelon) 지역의 제1심 법원(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과 항소법원(Tribunal supérieur d'Appel)의 재판이었다. 당시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법관이 동일인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에 대해 제척이 요구되자, ‘마요트(Mayotte), 생 피에르, 미클롱 및 해외 영토의 사법조직에 관한 1998년 8월 20일자 오르도낭스’⁷⁰⁾를 근

69) 심승범,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검토-헌법재판소 2019년 9월 20일 n° 2019-802 결정을 토대로 하여-」, 『고려법학』 제9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pp.204-205.

70) Ordonnance 98-729 du 20 août 1998 relative à l'organisation juridictionnelle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 et Miquelon.

거로 원격 화상재판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 사례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 원격 화상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2001년 11월 15일자 법률 제2001-1062호에 의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에 규정되었다. 이 조문은 현재까지도 프랑스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원격영상장치 사용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규정인데,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4번의 개정을 거쳐 총 9개의 항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 신설 당시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 화상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어 2002년 9월 9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보호유치 또는 사법유치의 연장에 대한 출석 또한 화상장치를 사용하도록 동조를 개정하였으며, 이후 동조에 대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형사절차상 화상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넓혀왔다.

나. 논의 현황

프랑스 사법절차에 있어서 비디오 컨퍼런싱 확대에 관한 공공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확대를 주도한 정부 및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다.⁷¹⁾ 화상방법은 물리적인 출석의 대안에 그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소송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화상 방식 활용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디오 컨퍼런싱

71) Marc Janin/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Jean Danet, Les Cahiers de la Justice, N° : La visio-conférence dans le prétoire, Dalloz, 2011(윤지영, 앞의 글, p.109에서 재인용).

72) 윤지영, 앞의 글, p.110.

이 소송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피해자 등을 배려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이를 형사절차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사건 관련자의 선택권과 거부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한다.⁷³⁾ 또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변호인의 위치와 설비의 배치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정립될 것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있다.⁷⁴⁾

다. 관련 사례

프랑스에서 화상장치는 수사나 예심수사에서, 증인·양당사자 및 전문가를 상대로 사용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제2항 및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가와 원격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에 대해 프랑스 파기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⁷⁵⁾⁷⁶⁾

73) Laurence Dumoulin, "Presents, distants ou absents? Les justiciables et le développement de la visioconférence dans la justice française",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es cours d'appel de l'Union européenn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TIC) au service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2011, p. 9(윤지영, 앞의 글, p.110에서 재인용).

74) 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 Justice et visioconférence: les audiences à distance. Genèse et institutionnalisation d'une innovation, Institut des Sciences sociales du Politique, 2009(윤지영, 앞의 글, p.110에서 재인용).

75) DALLOZ-Actualité, 「Comment un expert doit-il être auditionné à distance?」,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omment-un-expert-doit-il-etre-auditionne-distance>>.

76)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Crim. 20 févr. 2019, FS-P+B+I, n° 18-82.164와 Crim. 17 oct. 2018, F-D, n° 18-82.164 참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와의 접촉과 관련된 직업적 또는 자발적인 활동 수행의 영구적인 금지를 선고받았다. 이때 당사자는 휴가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지만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된 감정평가서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전문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프랑스 파기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중죄법원(重罪法院, cour d'assises)이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통신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심리를 수행하는 것은 중죄법원이 가지는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토론의 구술성(oralité des débats)에 관한 공공질서원칙(principe d'ordre public)⁷⁷⁾에 따라 증인과 전문가는 신체적으로 등장(comparution physique)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등장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에 규정되고 전송(transmission)의 기밀성(confidentialité)과 신뢰성(fiabilité)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아래에서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파기원은 이 사건에서 전문가의 ‘전화’ 심리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68조와 제706-71조 제3항은 “소환되는 전문가는 직접 또는 전송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시청각 통신수단을 통해 중죄법원에서 증언해야 한다(Les experts cités doivent déposer devant la cour d'assises, soit en personne, soit par 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 garantissant la confidentialité de la transmission)”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반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오디오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전문가의 증언은 인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77) 이는 법정에서 이야기와 증거를 구두로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간주되며, 특히 피고인의 권리와 변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원격 심리(audition à distance)는 기술적으로 비디오연결이나 전화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2000년 5월 29일자 협약에서도 고려되었고, 양자는 구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94-5조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동법 제706-71조에 위임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심문, 심리 또는 대질은 국제협약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수사 및 예심수사 과정에서 제706조-71조 제2항은 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에 대한 심리 또는 심문과 여러 사람들간의 대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통신수단에는 화상회의(videoconférence)와 (음성으로만 하는) 통신회의(téléconférence)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R53-33조 제1항은 “제706-7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성통신(télécommunication sonore)수단 또는 시청각통신(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심판사가 수감된 사람을 심리하거나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706-71조의 제4항에 따라 전항(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언급되었던 시청각통신(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수단에 의한 화상회의(videoconférence)만이 허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06-71조 제3항은 증인·양당사자 및 전문가를 심리하기 위해 시청각통신(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사건에서 파기원이 ‘전화’라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심리(audition par téléconférence)는 시청각통신수단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팬데믹 이후 논의를 시작한 일본

가. 법제

일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는 없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 관하여 “출두를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198조 제1항, 제223조 제1항), 그 외에 조사관과 대상자가 있어야 할 장소, 조사 방법 자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 방식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원격 화상방식을 이용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

나. 논의 현황

(1) 개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밀집’을 최대한 피하려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재택 업무 또는 수업이 시작되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러 명이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ZOOM을 사용한 회의, 쌍방이 비디오링크를 통한 통신, 서류를 전자화하고 이를 공유하는 유형의 행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기존 일본 형사절차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수집, 보존, 범죄사실 존부에

관한 주장·입증·사실 인정 등의 과정에서 주로 서류가 이용되며, 대부분 대면(對面)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서면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 온 형사절차의 내실을 바탕으로 IT화가 미칠 영향, 이로 인한 장점 및 단점, 형사소송절차에서 IT화할 수 있는 영역과 요건 등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졌다.⁷⁸⁾ 형사절차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형사절차의 IT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꾸준하고 착실히 이루어져 왔으며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022년 6월 7일 각의 결정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는 형사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하여 ‘2023년도에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시야에 두고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함’, ‘2025년도 중에 일부 시책의 운용개시를 염두에 두고 형사절차 디지털화 운용개시 상세 일정을 검토함’⁷⁹⁾ 등 형사절차 IT화에 대한 대략의 일정을 언급하고 있다.⁸⁰⁾

우선 법 정비의 측면에서는 법제심의회 제195회 회의(2022. 6. 27. 개최)에서 ‘형사절차의 IT화를 향한 정보통신기술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법 정비에 관한 자문 제122호’가 발신되었고⁸¹⁾, 이에 대하여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 부회’와 ‘형사법(범죄수익 등 신설 관계) 부회’가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IT 기반 정비에 관해서는 재판소, 경찰,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증거서류 등을 전자데이터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

78) ワークショップ, “刑事手続のIT化”, 刑法雑誌 62(3), 2023, p.545.

79) 内閣府 閣議決定, 『規制改革実施計画』, 2022.6.7.(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8.cao.go.jp/kisei-kaikaku/kisei/publication/p_plan.html>.

80) 그 밖에 형사절차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실시계획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로는 법제심의회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부회 제1회 회의 배부자료를 참고. 法制審議會刑事法(情報通信技術関係)部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記述を含む政府の基本方針・実施計画等(該当部分抜粋)』, 2022.7.29.(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77784.pdf>>.

81) 法制審議會第195回會議配布資料, 『諮問第122号』, 2022.6.27.(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75769.pdf>>.

다.⁸²⁾

(2)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의 최종보고서

2020년 7월 17일 내각 결정 ‘세계최선단 디지털 국가창조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는 “형사절차에도 디지털화를 실시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며 감염병의 감염확대 시에도 원만하고 신속한 공판절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조기에 디지털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계자의 권리의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사절차에서도 가능한 분야에 효율화, 비대면화·원격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도 중에 사법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영장청구·발부를 시작으로 하는 서류의 온라인 교부, 형사서류의 전자데이터화, 온라인을 활용한 공판 등 수사·공판의 디지털화 정책 검토를 시작한다”⁸³⁾고 하여 사법절차의 비대면화·비서류화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법무성에는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이하 ‘검토회’라고 한다)가 설치되었고 2021년 3월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⁸⁴⁾ 제1회 검토회 회의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이를 위한 대책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82) ひろば時論, “刑事手続のIT化の実現に向けた検討の現在地”, 法律のひろば 75(12), 2022.12., p.2.

83) 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2020.7.17., p.35,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45317.pdf>>.

84)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第1回会議, 2021.3.31.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46593.pdf>>.

먼저, 형사절차의 디지털화는 형사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합리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형사소송법」 제1조 “형사사건에서 공공복지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다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형벌법령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적용 및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이 수사와 공판의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여주고 권리이익을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⁸⁵⁾

또한 형사절차상 취급하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되면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사·공판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사회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형사절차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마쳤다.

2021년 4월 27일 제2회 회의에서는 향후 검토회에서 검토할 내용과 논점 항목을 정리하였다.⁸⁶⁾ 주요 논점으로는 (1) 서류의 전자데이터화 및 발송과 교부 등의 온라인화, (2) 수사·공판절차에서의 비대면화와 원격화, (3) 기타사항을 열거한 후 각각의 항목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2) 수사·공판절차에서의 비대면화와 원격화의 경우 ① 조사, ② 피의자·피고인과 접견교통, ③ 공판 전 정리절차, ④ 증인신문, ⑤

85)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2.3.15., p.3, (최종 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68581.pdf>>.

86)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第2回会議(令和3年 4月27日).

공판기일 출두, ⑥ 재판원 등 선임절차, ⑦ 공판심리 방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11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22년 3월 15일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⁸⁷⁾ 검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안(案)이거나 의견의 단계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⁸⁾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비대면·원격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우선 일본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 관하여 “출두를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8조 제1항, 제223조 제1항). 그 밖에 조사관과 대상자가 있어야 할 장소, 조사 방법 자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 방식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원격 비디오방식⁸⁹⁾을 이용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

최종보고서 수사절차에서의 비대면화 및 원격화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크게 ‘비디오링크를 활용한 조사, 변해녹취(辯解録取) 및 구속 관련 질문’을 들 수 있다. 비디오링크를 활용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점으로 다루어진 하나는 ‘조서의 작성방식’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관의 면전(面前)’ 개념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은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피의자의 진술 기록을 증거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조서녹취’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데 조사자는 녹취한 조서를 피의자가 열

87)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2.3.15.(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68581.pdf>>.

88) 山本 了宣, “刑事手続のIT化に備える”, 刑事弁護 108호, 2021, p.147.

89) 동 보고서에서는 ‘비디오 링크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비디오 링크방식은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람하게 하거나 피의자에게 내용을 읽어준 후 이의가 없을 시 피의자에게 서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서’는 종이에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비디오방식을 통한 조사에도 진술기록의 조서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데이터에 기록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대신할 기술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⁹⁰⁾

한편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검찰관의 면전에서 녹취한 서면”의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관 면전에서 녹취한 서면의 성격을 근거로 원격 비디오방식을 통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검찰관 앞에서 녹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자 한다. 검찰관의 면전에서 녹취한 서면이 제321조 제1항 제3호의 서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공정한 입장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 검찰관의 수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진술인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진술인이 소재하는 장소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는 상대적 특신상황의 유무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비록 비디오링크방식이라 하더라도 검찰관의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인 이상 이때 작성된 진술을 녹취한 서면이나 이를 기록한 전자데이터의 증거능력을 동일시하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⁹¹⁾

다음으로, 피의자가 검찰관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법원이 구속 전 시행하는 질문을 검찰관 앞이나 법원에서가 아닌 경찰서 등에서 원격 비디오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와 그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90)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2.3.15., p.19.

91)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2.3.15., p.21.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은 검찰관은 사법경찰이 송치한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변해녹취, 辯解錄取). 또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및 제61조는 검찰관이 피의자에 관한 구속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모두 피의자를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보낸 후 검찰관 및 판사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만약 피의자를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인치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머무르게 한 채로 원격 비디오방식을 통한 변해녹취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피의자와 검사의 소재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실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기존의 실무상 운용을 살펴보면 검찰관의 변해녹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검찰청 내지 법원에 압송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장소적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진술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영향을 받기 쉽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경찰서에 있으면서 원격 비디오방식으로 변해녹취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3)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 부회 회의

법무대신은 2022년 6월 27일 개최된 법제심의회 제195회 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법 정비에 관한 자문 제122호’를 발신하였다.⁹²⁾

자문 122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보급상황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관한 형사법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1) 형사절차에서 취급하는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이용하면서 온라인으로 발신과 수신을 할 수 있을 것, (2) 형사절차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져 온 수사·공판 등의 절차를 영상·음성의 송수신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1)과 (2)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문122호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 부회가 신설되었고 2022년 7월 29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12회 회의(2023년 9월 15일)가 개최되었다.

제2회 회의의 배포자료에는 검토항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 형사절차의 비대면에 관한 검토사항 중 ① 변해녹취·구속 전 피의자 심문, 조사 절차에서는 ‘유치시설 등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검찰관·재판소의 재판관이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변해녹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행하는 것’, ‘영상·음성 송수신 또는 대면조사에서 진술을 녹취한 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다.⁹²⁾

제4회 회의자료의 검토과제에서는 우선 재판소나 유치시설 등 사이에서 영상이나 음성의 송수신을 통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절차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① 형사소송법 제61조(동법 제207조)에 규정하는 진술 청취가 재판소에서 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②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 유치시설 등에 있는 피의자·피고인 등에 대하여 영상·음성의 송수신으로 실시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와 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피의

92) 諮問第122号(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77783.pdf>>.

93) 検討項目(法制審議會刑事法(情報通信技術關係)部会 第2回會議配布資料), 2022.9.2., p.2,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79796.pdf>>.

자 혹은 피고인과 대면으로 실시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사이에 절차상 적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③ ①과 ②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 유치시설 등에 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하여 영상·음성 송수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④ 그리고 이를 허용한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⁹⁴⁾

다음으로 검찰청과 유치시설 등 사이에서 영상·음성의 송수신으로 하는 변해녹취 규율에 관해서는, ①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해의 기회를 주는 것은 검찰청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동법 제203조 제1항이 “이를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05조 제1항이 “피의자를 인치하는 경우에는 변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② 검찰청의 검찰관이 유치시설 등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영상·음성의 송수신으로 하는 변해녹취의 절차와 검찰청에서 검찰관이 피의자와 대면으로 하는 변해녹취 사이에 절차상의 적정성에 차이가 있는가, ③ 검찰청에 있는 검찰관이 유치시설 등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영상·음성 송수신에 의한 변해청취 절차를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⁹⁵⁾

마지막으로, 영상·음성 송수신을 통한 경우 또는 대면조사 시 진술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규율의 경우 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이 “조서는 이를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읽어주어 오류가 있는지를 묻고 피의자가 이를 증감하거나 변경하는 신청을 한 때에는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

94) 考えられる仕組み・検討課題(諮問事項「二」関係), 第4回会議配布資料, 2022.11.4., p.1,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83115.pdf>>.

95) 考えられる仕組み・検討課題(諮問事項「二」関係), 第4回会議配布資料, 2022.11.4., p.2,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83115.pdf>>.

여야 한다”고 하며, 동조 제5항이 “피의자가 조서에 오류가 없다고 한 때에는 이곳에 서명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인가, ② 전자적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앞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규율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③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의 ‘검찰관 면전’에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⁹⁶⁾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 제12회 회의를 진행한 2023년 9월 15일에는 ‘최종보고를 위한 시안(자문사항 (2) 관련)’이 발표되었다. 시안에는 ‘유치시설 등과의 사이에서 영상과 음성 송수신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변해녹취 절차를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재판소와 유치시설 등 사이에서 영상이나 음성의 송수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절차에 관하여 “재판관은 구속 신청 대상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말하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듣는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재판소에 인치하여 이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된 형사시설에 재석(在席)하도록 하고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모두에서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의 재판관이 동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⁹⁷⁾

또한 검찰청과 유치시설 간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으로 변해녹취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검찰관은 피의자가 유치하는 형사시설에 재석하도록 하여

96) 考えられる仕組み・検討課題(諮問事項「二」関係), 第4回会議配布資料, 2022.11.4., p.2,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83115.pdf>>.

97) 取りまとめに向けたたたき台(諮問事項「二」関係), 第12回会議配布資料, 2023.9.15., p.1,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402988.pdf>>.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규정의 변해 기회를 주는 경우 모두에서 이를 동향의 검찰관으로 동향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는 취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⁹⁸⁾ 다만, 12회 회의자료에는 진술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자문 122호의 (3)에 관한 검토, 즉 (1)과 (2)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처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비디오링크방식으로 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기기의 기능을 전기적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다.⁹⁹⁾

(4) 비디오링크방식의 도입에 관한 논의

일본 형사소송법학회 제100회 대회의 워크숍에서는 형사절차의 IT화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 중 ‘비디오링크를 활용한 조사 및 증인신문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구속 중인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변호인 간 비디오링크 접견교통’과 ‘비디오링크를 활용한 증인신문’이 검토되었다.

전자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변호인 등과 접견교통을 비디오링크방식으로 실시하려고 할 때 변호인이 아닌 제3자의 동석이나 사칭 혹은 접견상황을 외부통신으로부터 유효하게 방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98) 取りまとめに向けたたたき台(諮問事項「二」関係), 第12回会議配布資料, 2023.9.15., p.1,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402988.pdf>>.

99) 検討のためのたたき台(諮問事項「三」関係), 第10回会議配布資料, 2023.5.26., p.1, (최종검색일: 2023.10.5.), <<https://www.moj.go.jp/content/001396375.pdf>>.

실무상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소위 액세스 포인트 방식¹⁰⁰⁾의 설치가 적절한 시설의 범위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¹⁰¹⁾ 접견은 미결구금자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 등을 이유로 비디오링크방식을 활용한 실시의 필요성이 높다고 한다.¹⁰²⁾

한편, 비디오링크방식의 신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다른 문헌에서는 비디오링크를 활용한 신문이 직접주의의 중대한 예외이면서 반대신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비디오링크방식의 신문 확대는 검찰관입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불평등 등 방어권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¹⁰³⁾

100) 변호사 등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수용 되어 있는 형사시설·유치시설과 비디오링크방식으로 접속되어있는 특정시설 액세스포인트로 간 후 해당 시설의 직원 등이 변호인 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통신설비가 있는 방에 타인이 있는지, 부정사용이 가능한 전자기기등을 휴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한 후 입실 후에 부정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등과 피의자 등이 비디오링크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워크숍, “刑事手続のIT化”, 刑法雑誌 62(3), 2023, p.547).

101) 워크숍, “刑事手続のIT化”, 刑法雑誌 62(3), 2023, p.547.

102) 워크숍, “刑事手続のIT化”, 刑法雑誌 62(3), 2023, p.547.

103) 山本 了宣, “刑事手続のIT化に備える”, 刑事弁護 108호, 2021, p.149.

6.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된 미국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집행기관의 감염을 줄이고 사법시스템 내로의 사람들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경찰 부서들은 그들의 업무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 변경된 위험 환경에 대응하면서 안전과 범죄 대응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¹⁰⁴⁾

경찰 서비스는 팬데믹 시기 동안 가상방식으로(virtually) 제공되었다. 몇몇 부서들은 바이러스의 도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대중들이 출입하는 경찰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렸다.¹⁰⁵⁾ 경찰관들과 대중들 사이의 접촉을 더욱 줄이기 위하여 많은 경찰 부서들은 서비스 요청에 대한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¹⁰⁶⁾ 전통적으로 경찰에 대한 요청에는 경찰관이 직접 대면으로 응하였는데, 일부 부서는 그들이 응할 요청의 유형을 줄여 비교적 사소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수행하였다.¹⁰⁷⁾

104) Brian A. Jackson et al.,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Pandemic Era and Beyond: Taking Stock of Efforts to Maintain Safety and Justic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 for Future Challenge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21, p.40.

105) Rosa Brooks and Christy Lopez, *Policing in a Time of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Georgetown Law Innovative Policing Program and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April 10, 2020, p.11; Wesley G. Jennings and Nicholas M. Perez, *The Immediate Impact of COVID-19 on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45, 2020.

106) Brian A. Jackson et al., op. cit., p.41.

107) Brian A. Jackson et al., ibid., p.41.

실무가들은 직접 대응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옵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⁰⁸⁾ 그러나 형사사법시스템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환은 감염병 확산 기간 동안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지역을 위주로 이미 이러한 대안적 방식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변화가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¹⁰⁹⁾

또 경찰과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협력 내지 상호작용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비가 되었고, 기존의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시민 또는 특정 그룹과의 가상회의를 포함한 기술적 대체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¹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 특히 경미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 즉 특정 유형의 가벼운 범죄들에 대하여 체포가 필요할 것인지의 문제, 특정 범죄에 대한 피의자 대면조사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 음주측정기 등 대면접촉적 조치의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¹¹¹⁾

전염병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하여 대안 없이 체포 등의 조치를 미집행하고 연기하기만 한다면 팬데믹 정상화 이후 해결해야 하는 미해결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추후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야 할 사건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의와 서비스에 대한 가상방식적 접근으로의 대규모 전환은 사법기관과

108) Brian A. Jackson et al., *ibid.*, p.42.

109) Brian A. Jackson et al., *ibid.*, p.42.

110) Brian A. Jackson et al., *ibid.*, p.43.

111) Brian A. Jackson et al., *ibid.*, pp.49-50.

사회 모두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분석가들과 실무자들 역시 사법제도에 원격기술 및 다른 가상 기술들을 추가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¹¹²⁾ 그리고 가상방식의 활용을 통한 혜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극적으로 실현되었고, 기관들은 이전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던 업무와 기능에 가상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다.¹¹³⁾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던 가상방식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우연한 위기상황의 도래로 인하여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온라인 경찰 서비스의 확대는 경찰관들의 시간을 절약시켜 주었고, 법원과 교정시설 사이의 가상 연결은 두 시스템 모두에 가치가 있어 일부 작업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운송 비용과 보안 위험을 덜 들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¹¹⁴⁾ 국민들이 법정에 가고, 수감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감독 중에 보고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상의 연결 능력은 그들에게 돈과 시간을 절약해 주었고,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훨씬 덜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¹¹⁵⁾

다만 가상방식이 기존의 대면방식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보의 격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¹¹⁶⁾ 모든 사법 기관이나 지원 기관이 신속하게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이 기술과 연결성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¹⁷⁾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국가위원회와 형사사법위원회는 내

112) Brian A. Jackson et al., *ibid.*, pp.264-265.

113) Brian A. Jackson et al., *ibid.*, p.265.

114) Brian A. Jackson et al., *ibid.*, p.265.

115) Brian A. Jackson et al., *ibid.*, p.265.

116) Brian A. Jackson et al., *ibid.*, p.265.

117) Brian A. Jackson et al., *ibid.*, p.265.

부 시스템의 역량 부족과 디지털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사법제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고했다.¹¹⁸⁾

118) National Commission on COVID-19 and Criminal Justice, Experience to Action: Reshaping Criminal Justice After COVID-19, Washington, D.C.: Council on Criminal Justice, December 2020b, p.16.

7.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증인 보호 및 실체진실 발견의 촉진을 목적으로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 제도를 강화하였다. 양국의 학계에서는 화상조사방식이 수사절차에서 필요하고도 유용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상조사가 대면조사에 비하면 피의자의 인상과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하는 데 불리해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대면조사방식과 화상조사방식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전자를 후자로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전자를 후자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은 증인이나 피의자를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직접 소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조사방식이 아닌 대면조사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상조사방식의 요건을 대폭 낮추어 화상조사방식과 대면조사방식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고 할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다소간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대면조사방식에 비할 때 화상조사방식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계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화상조사방식을 사용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화상조사기술을 공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 규정(제136조)과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 영상중계 규정(제153조) 등을 참고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문을 대면조사방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화상조사방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각각 열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면조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비상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비대면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2001년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절차를 비롯해 구금이나 공판절차 같은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원격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형사절차의 비대면화 및 원격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부회 회의 등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대안 마련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화상조사방법의 도입을 통한 수사방법의 가시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일반규정이 있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이 중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적 허용, 오스트리아는 제한적 허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임시적인 허용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법」에 예외적 적

용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형사절차를 전자화하고 비대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는 우선 참고인 조사를 대상으로 화상조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였고, 향후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래된 변화, 즉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상황하에서는 대면이 곧 감염병 확산을 통한 치명적 결과로 연결되므로 대면성에 대한 포기 내지 양보가 강하게 요구되었고, 그동안 대면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던 수사활동에 대하여는 일시적 포기가 아니면 비대면적 대체방법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다시 팬데믹 사태를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사기관이 통일된 기준과 지침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수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매뉴얼을 확립하여 두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의 「피의자 대면조사에 관한 지침」이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화상조사방법의 이점과 한계점,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화상조사방법을 수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IV.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방안

1. 활용방안 구상에 있어서 고려요소

가. 기술적 요소

(1) 본인인증기술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우선 기술적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본인인증기술이라 할 것이다. 원격 화상조사방법이 수사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은 진술자 신원 확인절차에 있어서 대면절차를 통한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엄격한 동일성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의 인증방식으로 활용되는 화상을 통한 신분증 제시 혹은 인증서 등의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방식은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 시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¹¹⁹⁾ 그 정도로는 해당 조사대상이 화면을 통하여 송출되는 자 본인이라는 본인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생김새가 매우 유사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본인이 아닌 쌍둥이 형제 혹은 자매가 신분증을 화상으로 제시한 후 진술한다 하더라도 화면

119) 김대근 외, 앞의 글, p.317.

건너편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술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분확인절차의 핵심은 개개인의 고유성이 보장되는 ‘지문’의 정확한 확인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장치 없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혹은 모바일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정확히 지문을 인식 및 판별하는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보편화되어야 원격 화상조사의 활용폭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동일성 식별을 신뢰할 수 정도로 할 수 있는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지문은 물론 안구, 안면, 목소리 등을 함께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복합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신원확인에 있어서 확실성을 더욱 강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 별도의 장치 없는 스크린에서의 신뢰할 만한 지문 확인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가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대면조사를 전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사방법으로 취급한다거나 혹은 참고인 등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까지 전폭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기술 발전도를 고려한다면, 온디스플레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닌 듯하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를 때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이하 SID) ‘디스플레이 위크(Display Week) 2023’에 참가하여 지문 및 혈압 센서를 별도 모듈로 부착하지 않고 패널에 내장해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활용성을 제시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¹²⁰⁾

120) 이는 화면 전체에서 지문을 인식하고 심혈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 2]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



자료: 이원영, 「지문 인증+혈압·맥박 측정 가능한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에서 지문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있어 지문 인식이 쉬워질 뿐 아니라 복수 손가락으로 인증을 실시하는 멀티 핑거 인증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보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¹²¹⁾ 여러 개의 손가락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한 개의 손가락으로

삼성디스플레이만의 신기술이라고 한다. 통상 스마트폰의 지문 센서는 별개의 모듈로서 OLED 패널 밑에 부착되는데,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소자를 증착할 때 광센서인 유기광다이오드(Organic Photodiode, OPD)도 함께 증착하는 방식으로 패널 자체에 내재화했다. OPD 내장 패널은 손가락 터치만으로 사용자의 심박수와 혈압,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OLED 빛이 손가락 내부 혈관의 수축·이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사돼 패널로 돌아오면, 이를 OPD가 인식해 건강 정보로 바꿔 보여주는 원리다. 지문과 생체 정보를 동시에 센싱할 수 있는 패널 기술을 공개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초라고 한다(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보도자료,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러다임 바꿀 신기술 대거 공개」, 2023.5.23.(최종검색일: 2023.10.16.), <<https://news.samsungdisplay.com/34036?type=main>>.

인증하는 경우보다 정확도 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해당 기술이 완성되어 상용화된다면 화상조사방법 사용을 위한 본인인증에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본다.

(2)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 등

영상중계를 할 때에는 카메라의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주위 상황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한다면 진술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되며, 카메라를 너무 멀리 잡으면 신체 전체를 포착할 수 있으나 신문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여러 면이나 공간의 여러 면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 주는 이른바 스플릿 스크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¹²²⁾

그리고 카메라가 신문을 하는 장소를 모두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개인이 잘 보이지 않고 그의 진술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¹²³⁾

나아가 진술자의 상반신 전체, 특히 화면에 지문을 찍는 손가락이 대상자

121) 이원영, 「지문 인증+혈압·맥박 측정 가능한 디스플레이?」, 『테크레시피』, 2023.5.26.(최종검색일: 2023.10.16.), <<https://techrecipe.co.kr/posts/54316/amp>>.

122)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8 f.

123)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6 ff.

의 신체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화면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송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인 사례로서 앞서 언급한 쌍둥이 사례에서, 화면에서는 쌍둥이 형제 중 A의 얼굴만 나오지만 사실 화면 밖에 있는 쌍둥이 형제 B가 화면에 손가락을 접촉하여 마치 A가 직접 지문 확인에 응하고 진술하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노릇이다.

(3) 네트워크 연결의 안전성 및 네트워크 보안성

네트워크 연결의 안전성 및 네트워크의 보안성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될 것이다. 원격 화상연결을 통한 조사에 있어서 기술 부족 등으로 화면송출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비디오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혹은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영상과 음성이 같은 속도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 또는 진술을 이해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게 될 것이다.¹²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영상과 음성을 통하여 대면에서 마주하면서 수집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화상조사방식이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딥페이크 기술 등에 의하여 조작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보안상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¹²⁵⁾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관 등과 조사 대상의

124)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6 ff.

125)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연결이 노출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킹을 통한 본인 인증에 대한 방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조사대상인 사람인 척 연기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수준을 매우 높여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딥페이크 기술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기술적 여건 및 사회적 인식 등 제반상황에서 화상조사가 대면조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에 따라 허용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는 아직은 완전히 대면조사를 대체하여 화상조사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적 적용범위 측면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만큼 신분확인이 엄격히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동일인 확인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원격 화상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정도의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우선 이를 활용해 보고, 본인 인증기술의 신뢰성 및 보안상 안전성 등이 더욱 강하게 담보된 시점에서 피의자 신문에 본격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바람직하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26 ff.

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안내자료에서 법무부가 참고인 조사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차츰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범죄의 종류, 특히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허용범위의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본인인증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조사 후 체포 혹은 구속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는 화상조사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먼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가 분명해서 조사 후에 바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면조사를 해야 하고, 2차 피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면조사 후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¹²⁶⁾ 따라서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통한 신문이 어려울 것이다.¹²⁷⁾

또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이 화상조사 내용을 함께 청취했을 때 진술번복, 증거인멸, 출석불응,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추가적 여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역시 피의자가 여죄를 인지한 순간 증거를 인멸할 혹은 도주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한 조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¹²⁸⁾

따라서 범죄의 종류에 따른 차별화 차원에서 우선 원칙적으로 경미범죄

126) 김대근 외, 앞의 글, p.317.

127) 김대근 외, 앞의 글, p.317.

128) 김대근 외, 앞의 글, p.317.

등에 한정하여 허용을 하고 본인인증기술의 신뢰성 및 보안상 안전성 등이 더욱 강하게 담보된 시점에서 중범죄 일부에까지 적용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팬데믹 상황 등 비대면성 요구단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중범죄 등에 대하여도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앞서 오스트리아의 관련 논의 현황에서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⁹⁾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 방식을 사용하면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방해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양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는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에서 변호인이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신문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¹³⁰⁾ 조사대상자 등의 불편 및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조사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화상조사방식 활용의 중요한 이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반드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원격

129)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48 ff.

130) Hartl,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S. 48 ff.

연결은 허용하면서 변호인과 피의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화상조사가 가능하다면 화상조사방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될 것이다.

변호인이 피의자와 다른 공간에 있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인 알마 자디츠(Alma Zadić)가 언급한, 화상조사방식으로 신문을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휴대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혹은 신문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상 가상공간에서 수사기관의 간섭 없이 변호인과 피의자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조사 대상자의 의사

앞서 화상조사방법이 조사대상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대면조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조사자는 조사대상자를 대면으로 조사하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그 대상자의 섬세한 반응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데, 화상을 통한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이점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용이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전화통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그 조력의 정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대면조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변호인 조력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만약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변호인의 조력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느끼거나 혹은 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대면조사를 받도록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화상조사기술의 완성도,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화상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경우에는 더더욱 선택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이란 대면조사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혹은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다. 비말을 통한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없을 정도로 접촉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거의 멈추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성·비접촉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대면성·접촉성을 기초로 한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상황적 요인으로서 팬데믹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대면접촉의 위험성 정도’ 및 ‘비대면·비접촉 요구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면접촉의 위험성이 높고, 비대면성 및 비접촉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적 수사방법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대면수사가 이루어진 분야에 있어서는 수사의 중지 및

지연을 통한 불이익과 비대면 방식을 취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문제점 간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팬데믹 상황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려요소들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성 높은 본인인증기술의 상용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라 할지라도 수사 업무의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대응책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가.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¹³¹⁾ 향후 추진과제로서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화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²⁾ 기관 출석에 따른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¹³³⁾

수사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관계인과 원격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사건관계인의 조사공간으로는 유치장,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도 포함되고, 도구 측면에서는 PC나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¹³⁴⁾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술조서가 작성된다.¹³⁵⁾ 참고인 동의 시에는 시스템에서 영상녹화도 가능하고, 이때 시스템상 영상녹화동의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¹³⁶⁾ 법무부는 참고인 조사에 우선 적용 후 교정기관 수용

131)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입법예고 -」, 2020, p.5.

132) 법무부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자료, p.15, (최종검색일: 2023.8.23.), <https://www.kics.go.kr/images/renew/brochure/kics_brochure.pdf>.

133) 법무부, kics 소개자료, p.15.

134) 법무부, kics 소개자료, p.15.

135) 법무부, kics 소개자료, p.15.

자 조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¹³⁷⁾

효율적이면서도 신뢰가능한 조사방법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 즉 본인인증기술 및 네트워크 연결성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요소,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피의자의 방어권, 조사 대상자의 의사,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사상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여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한 영역부터 시범도입을 하여 차츰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팬데믹 등 비상상황이 아닌, 정상적으로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현 시점의 기술적 완성도를 파악하고 조사대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허용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화상조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본인인증기술이고, 현재의 과학기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인식방법이라 할 것이다. 화상조사방법이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결국 화면 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정밀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는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상용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주요 스마트폰 생산자 등이 현재 확보한 기술 및 연구 상황을 고려한다면,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활용될 날이 아주 멀지는 않은 듯하나, 아직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화상조사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36) 법무부, kics 소개자료, p.15.

137) 법무부, kics 소개자료, p.15.

결국 현재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본인인증의 신뢰도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는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요구가 낮은 그 외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상용화되더라도 안면인식 등 다른 기술과 복합적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사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을 들 수 있다. 특히 해킹을 통한 노출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본인인증 기망 등에 대비한 강력한 보안시스템의 확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변호인과 동떨어져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방어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과의 전화통화 혹은 화상조사 시스템상 가상공간상 변호인과의 은밀한 소통 방법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피의자 신문에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우선 원칙적으로 경미범죄 등에 한하여 활용을 하고 문제점 및 도전과제의 발생 경과를 살펴보며 차츰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를 받는 대상이 대면조사와 화상조사 중 원하는 조사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대면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팬데믹 등 상황하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그리고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범위를 넓히거나 대면조사를 금지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위한 입법안

수사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법과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하는 방법¹³⁸⁾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우선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화상조사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들, 즉 앞서 언급한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고려요소 및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들은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변성 강한 요소들은 명령이나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도 있다.

한편 피의자 신문 시와 참고인 조사 시에 이루어지는 영상녹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원격 화상조사 시의 녹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팬데믹 등 비대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비상상황하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범위를 예외적으로 넓히는 규정 신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본인인증기술을 고려할 때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조사에 한하여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면조사를 전제로 한 「형

138) 이를 주장하는 입장으로는 김대근 외, 앞의 글, p.316.

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선택에 따라 화상조사방법을 통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리고 향후 ‘법제 정비방향’ 부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하여도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피의자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

200조에 따른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절차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에 있어서 직접대면조사가 아닌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방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현재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법무부는 추후 참고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원격 화상조사방법을 취할 것이라 예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에 대하여 밝힌 바는 없다.

수사에 있어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이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직접 경찰관서 등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불편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이유로 협조를 기피하는 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팬데믹 등 상황하에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의 법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일반규정이 있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이 중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적 허용, 오스트리아는 제한적 허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임시적인 허용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영국을 들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증인 보호 및 실체진실 발견의 촉진을 목적으로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 제도를 강화하였다. 양국의 학계에서는

화상조사방식이 수사절차에서 필요하고도 유용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상조사가 대면조사에 비하면 피의자의 인상과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하는 데 불리해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대면조사방식과 화상조사방식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전자를 후자로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전자를 후자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면조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비상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비대면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2001년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절차를 비롯해 구금이나 공판절차 같은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원격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대안 마련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가상조사방법의 도입을 통한 수사방법의 가시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형사절차의 비대면화 및 원격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부회 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절차의 전자화 추세 및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한 대비라는 명분과

함께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화상조사방법의 이점과 한계점,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화상조사방법을 수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다만 수사절차에서 화상조사방법을 대폭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요소로서 우선 기술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이 중 본인인증기술은 기술적 요소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원격 화상조사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한 필수전제요건은 진술자 신원확인절차의 신뢰성 확보라 할 것이고, 이는 대면절차를 통한 동일성 확인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된다. 화상조사방법이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화면 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정밀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는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술이 상용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주요 스마트폰 생산자 등이 현재 확보한 기술 및 연구 상황을 고려한다면,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술이 활용될 날이 아주 멀지는 않은 듯하나, 아직 이러한 기술을 널리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화상조사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네트워크 연결의 안전성 및 네트워크의 보안성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다.

다음으로, 기술적 여건 및 사회적 인식 등 제반상황에서 화상조사가 대면 조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에 따라 허용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원확인의 정확성이 매우 강하게 요청되는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는 아직은 완전히 대면조사를 대체하여 화상조사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본인인증 신뢰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 외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허용범위를 차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인과 동떨어져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방어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과의 전화통화 혹은 화상조사 시스템상 가상공간상 변호인과의 은밀한 소통 방법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조사 대상자의 의사도 고려하여 조사를 받는 대상이 대면조사와 화상조사 중 원하는 조사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팬데믹 등 상황하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그리고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범위를 넓히거나 대면조사를 금지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면접촉의 위험성 정도’ 및 ‘비대면·비접촉 요구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효율적이면서도 신뢰가능한 조사방법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 즉 본인인증기술 및 네트워크 연결성과 보안성이 중심이 되는 기술적 요소, 조사 대상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범죄의 종류에 따른 허용범위의 차별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조사 대상자의 의사,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성 요구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사상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여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한 영역부터 시범도입을 하여 차츰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법과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우선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서 화상조사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화상조사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들, 즉 앞서 언급한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고려요소 및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들은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에 대한 규정은 대면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본인인증기술을 고려할 때,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조사에 한하여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22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피의자에 대하여도 화상조사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피의자에 대해서도 화상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변성 강한 요소들은 명령이나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도 있다.

한편 피의자 신문 시와 참고인 조사 시에 이루어지는 영상녹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원격 화상조사 시의 녹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팬데믹 등 비대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비상상황하에서 화상조사방법의 활용범위를 예외적으로 넓히는 규정 신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

계인국/박준선/안문희/양시훈/최은정/하민경,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16.

김대근/전현욱/김민규/강지현/김기범/남궁주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대응(I)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도규엽,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 2022.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심승범,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검토-헌법재판소 2019년 9월 20일 n° 2019-802 결정을 토대로 하여-」, 『고려법학』 제9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안수길, 「독일의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제도」,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 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정웅석,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25호, 대검찰청, 2010.

조기영, 「코로나 시대 형사정책의 과제」,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형

사절차전자문서법」 입법예고 -」, 2020.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자료,
<https://www.kics.go.kr/images/renew/brochure/kics_brochure.pdf>.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보도자료,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러다임 바꿀 신
기술 대거 공개」, 2023.5.23. <<https://news.samsungdisplay.com/34036?type=main>>.

이원영, 「지문 인증+혈압·맥박 측정 가능한 디스플레이?」, 『테크레시피』,
2023.5.26. <<https://techrecipe.co.kr/posts/54316/amp>>.

2. 외국

1) 유럽 및 미국

Bader, M., § 58b, KK-StPO, 9. Aufl., 2023.

BMJV, Entwurf eines Gesetzes zur Fortentwickl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2020.10.6.

Brexl, T., “Gesetz zur Fortentwicklung der StPO: Lichtblicke bei der
Revisionsbegründungsfrist”, AnwBl Online 2021, S. 271 ff.

Brian A. Jackson, Michael J. D. Vermeer, Dulani Woods, Duren Banks, Sean
E. Goodison, Joe Russo, Jeremy D. Barnum, Camille Gourdet, Lynn
Langton, Michael G. Planty, Shoshana R. Shelton, Siara I. Sitar, Amanda
R. Witwer,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Pandemic Era and
Beyond: Taking Stock of Efforts to Maintain Safety and Justic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 for Future Challenges*, Santa

-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21.
- Brian A. Jackson, Michael J. D. Vermeer, Dulani Woods, Duren Banks, Sean E. Goodison, Joe Russo, Jeremy D. Barnum, Camille Gourdet, Lynn Langton, Michael G. Planty, Shoshana R. Shelton, Siara I. Sitar, Amanda R. Witwer, *How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COVID-19 Response Has Provided Valuable Lessons for Broader Reform: Looking to the Future*, Priority Criminal Justice Needs Initiative, 2021.
- BT-Drs. 17/1224, 2010.3.24.
-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8 Teil I Nr. 25,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ßordnung und der 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 - ZSchG), 1998. 4. 30.
-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21 Teil I Nr. 37 Gesetz zur Fortentwickl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2021.6.25.
- Bundesrechtsanwaltskammer, Stellungnahme zu Artikel 1 und 6 des Entwurfes eines 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 (BT-Drucks. 17/1224), 2010.
- Hartl, A., Audiovisuelle Vernehmungen und Verhandlungen im Strafverfahren.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zur schriftlichen Protokollierung und deren Problemstellung, 2022.
- Hinterhofer, H./Oshidari, B. P., System der österreichischen Strafverfahrens, 2017.
- Maier, S., § 58b, MüKoStPO, 2. Aufl., 2023.

Meißner, M., “Corona und StPO oder: Eine (rechtstechnisch) kleine Änderung mit weitreichender Wirkung”, 2020.10.30.

National Commission on COVID-19 and Criminal Justice, Experience to Action: Reshaping Criminal Justice After COVID-19, Washington, D.C.: Council on Criminal Justice, December 2020b.

Rosa Brooks, Christy Lopez, *Policing in a Time of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Georgetown Law Innovative Policing Program and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April 10, 2020.

Sautner, L., Videotechnologie im Strafverfahren: Kommunikation, Dokumentation und Reproduktion, Juristische Blätter 141, 2019.

Schmitt, B., § 58b, Meyer-Goßner/Schmitt, StPO, 63. Aufl., 2020.

Wesley G. Jennings, Nicholas M. Perez, *The Immediate Impact of COVID-19 on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45, 2020

「Joint Interim Interview Protocol between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Crown Prosecution Service, The Law Society, Criminal Law Solicitors’ Association and London Criminal Courts Solicitors’ Association (v.4 - revised October 2021)」,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National-Interview-Protocol-COVID19-Version-4-4-October-2021.pdf>>.

DALLOZ-Actualité, 「Comment un expert doit-il être auditionné à distance?」,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omment-un-expert-doit-il-etre-auditionne-distance>>.

2) 일본

山本 了宣, “刑事手続のIT化に備える”, 刑事弁護 108호, 2021.

ひろば時論, “刑事手続のIT化の実現に向けた検討の現在地”, 法律のひろば 75(12), 2022.12.

ワークショップ, “刑事手続のIT化”, 刑法雑誌 62(3), 2023.

법무성 법제심의회 형사법(정보통신기술관계)부회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 회의자료(1-12회),

<https://www.moj.go.jp/shingi1/housei02_003011_00002>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12回会議 (令和5年9月15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11回会議 (令和5年8月4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10回会議 (令和5年5月26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9回会議 (令和5年4月24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 · 期日外 (令和5年4月21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8回会議 (令和5年3月14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7回会議 (令和5年2月7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6回会議 (令和4年12月27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5回会議 (令和4年12月2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4回会議 (令和4年11月4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3回会議 (令和4年9月26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2回会議 (令和4年9月2日開催)

刑事法 (情報通信技術関係) 部会第1回会議 (令和4年7月29日開催)

형사절차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검토회(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

의 활용に関する検討会) 회의자료 및 최종보고서(1-11회) : 각 회의자료의
참고자료를 함께 활용

<https://www.moj.go.jp/keiji1/keiji07_00011.html>

第1 회會議 (令和3年3月31日)

第2 회會議 (令和3年4月27日)

第3 회會議 (令和3年5月27日)

第4 회會議 (令和3年6月29日)

第5 회會議 (令和3年7月27日)

第6 회會議 (令和3年9月15日)

第7 회會議 (令和3年10月18日)

第8 회會議 (令和3年11月19日)

第9 회會議 (令和3年12月23日)

資料33 諸外国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法制・運用の概要

【暫定版・更新版】

第10 회會議 (令和4年2月10日)

第11 회會議 (令和4年3月15日)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法制審議會刑事法(情報通信技術関係)部会,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
技術の活用に関する記述を含む政府の基本方針・実施計画等(該当部分
抜粋)』, 2022.7.29. <<https://www.moj.go.jp/content/001377784.pdf>>.

法制審議會第195 회會議配布資料, 『諮問第122号』, 2022.6.27.

<<https://www.moj.go.jp/content/001375769.pdf>>.

内閣府, 『規制改革実施計画』, 2022.6.7.

<https://www8.cao.go.jp/kisei-kaikaku/kisei/publication/p_plan.html>.